

<http://rri.ekr.or.kr>

**농촌정책변화에 따른 농촌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2**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정책변화에 따른 농촌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창영  
연구원 김현수  
연구원 임상봉  
연구원 이승헌  
연구원 김광용

위촉연구자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이준우  
이진우법률사무소  
연구원 이진우

##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 농촌정책변화에 따른 농촌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2007년 11월 ~ 2008년 2월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농산물 개방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등 여건이 변화와 오지 개발사업 등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으로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법령 개정 수요 발생
- 농수산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정법의 개정 필요성 대두

3.2 목 적

- 대내외 농정연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어촌정비법이 타 부처에서 이관되어 '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농어촌정비법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4. 연구내용 및 결론

### 4.1 연구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별 적정 추진 체계 정비
- 농촌지역개발분야의 정비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 체계 보완
- 소득기반 분야의 정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정비지구 절차 보완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분야의 체계정비

### 4.2 연구결과

- 농촌 공간을 종합적·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한다. 또한 법령은 운용 및 관리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한다
- 농어촌정비계획법의 입법방향은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사업이 국토계획체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농촌공간계획 체계를 정비한다.
- 농어촌개발법 또는 부문별 개발법은 농어촌정비계획법을 기본 근간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한다. 이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등도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법령의 정비·개선 작업의 근거 제공
- 농업·농촌관련 각종 규제수단의 합리화 및 절차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지침 제공

# 목 차

제1장 서론 .....	1
1.1 농어촌정비법 개정 필요성 .....	1
1.2 연구내용 및 방법 .....	2
1.2.1 농어촌정비법의 체계정비 부문 .....	3
1.2.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법조문화 부문 .....	3
제2장 농어촌정비법의 현행 체계 문제점 .....	4
2.1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입법사항 .....	4
2.1.1 현행법의 문제점 .....	4
2.1.2 입법목적의 확대 필요 .....	4
2.1.3 체계화 문제 .....	5
2.1.3.1 농어촌정비의 개념 정립 문제 .....	6
2.1.3.2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6
2.1.3.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정의 확대 .....	6
2.1.3.4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	7
2.1.3.5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7
2.1.3.6 한계농지정비 .....	7
2.1.3.7 농공단지의 개발 .....	8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별 적정 추진체계 법제화 .....	9
2.2.1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 .....	9
2.2.1.1 법체계상 문제점과 정비방향 .....	9
2.2.1.2 구체적인 정비 입법사항 .....	10
2.2.2 농촌지역개발분야 .....	11
2.2.3 소득기반분야 .....	12
2.2.4 기타 .....	12

<b>제3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시안</b> .....	<b>13</b>
3.1 체계정비방향 .....	13
3.1.1 고려사항 .....	13
3.1.2 정비방향 .....	14
3.1.3 법령체계 .....	17
3.1.4 관련 법령상 계획·정책의 비교 .....	19
3.1.5 업무 근거 법령 .....	22
3.2 개정시안 .....	23
3.2.1 기본방향 .....	23
3.2.1.1 입법취지 .....	23
3.2.1.2 농어촌정비법 체계 정비 방향 .....	23
3.2.2 농어촌정비계획법의 입법방향 .....	24
3.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 확보 .....	24
3.2.3 농어촌개발법 또는 부문별 개발법 .....	26
3.2.3.1 입법방향 및 주요 골자 .....	26
3.2.3.2 「농업생산기반정비법(가칭)」 입법시안 .....	26
3.2.3.3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가칭)」 입법시안 .....	63
<b>■ 부    록</b> .....	<b>79</b>

# 제1장 서론

## 1.1 농어촌정비법 개정 필요성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1994년 법률 제정 후 전체적인 체계정비 없이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진행되어 농정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

현행 법령에서는 법 제4조에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정비, 농어촌관광휴양 자원개발 및 한계농지의 정비, 농공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촌토지이용 관련 계획 및 관리 기능이 미흡하여 농촌공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고,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일반적 인식이다.

현행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다시 1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과 농림지역으로만 지정하는데 그쳐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수단이 미비된 실정이다. 농촌토지를 다원적 용도로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농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농촌토지이용체계 및 관리수단을 보완 정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산물 개방 확대, 쌀소비 감소, 한국농촌공사 출범 등 여건이 변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 등의 농림부 이관으로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법령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법령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원마을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자부에서 이관되어 '07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농어촌정비법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울러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완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하여야 한다.

한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출범 등 여건에 맞추어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업에 적합한 추진체제로 정비하며, 그동안 수차에 걸친 업무이양, 권한위임 등에 따른 체계의 혼란을 정비하여 바로잡을 필요성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제정중인 도농교류촉진법과 연계하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농어촌정비법에 포함된 관광휴양 부분을 도농교류촉진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절차 등을 검토하고 그동안 짜깁기식의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한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농어촌정비법 전반에 걸쳐 검토하여 전부개정 수준으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자체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수요 조사, 농림부의 농촌정책국 각 과 및 한국농촌공사가 참여하는 T/F의 관련 정책분석 및 입법방향 조사, 합리적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주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1 농어촌정비법의 체계정비 부문**

농어촌정비법의 현행체계 문제점 검토 및 법체계의 새로운 정비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법령 개정 수요 반영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다양한 종류의 사업에 적합한 추진 체계 법제화하며, 도농교류촉진법안 등 관련 법제의 분석 및 체계 정비를 내용으로 한다.

### **1.2.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법조문화 부문**

농어촌정비법의 분야별 개정안에 대한 세부조항의 법 조문화이다. 농어촌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절차 등을 검토,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및 개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다.

## 제2장 농어촌정비법의 현행 체계 문제점

### 2.1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른 입법사항

#### 2.1.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 법령에서는 법 제4조에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정비,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의 정비, 농공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농촌토지이용 관련 계획 및 관리 기능이 미흡하여 농촌공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고,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현행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4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다시 1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과 농림지역으로만 지정하는데 그쳐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수단이 미비된 실정이다. 농촌토지를 다원적 용도로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농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농촌토지이용체계 및 관리수단을 보완 정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1.2 입법목적의 확대 필요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은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촌개발정책이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농촌개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여전히 농업생산기반정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기반시설물의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1.3 체계화 문제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농어촌정비의 개념 정립,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정의 확대, 환지(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한계농지정비 및 농공단지의 개발 등에 관하여 농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정비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농어촌정비법은 그 사항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 농어촌정비법 체계와 분야별 관련 규정

농어촌정비법 체계	생산 기반	생활 환경	관광 ·산업
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	○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	○	○
제4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	-	-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	○	-
제6장 농어촌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	-	-	○
제1절 농어촌관광휴양 자원 개발	-	-	○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	-	○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	-	-	○
제7장 보칙	○	○	○
부칙			

### 2.1.3.1 농어촌정비의 개념 정립 문제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활용 및 농어촌정비종합계획에 어촌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개발계획은 어촌·어항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범위에는 산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임산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만 산촌개발사업 위탁시행자로 공사가 지정되어 있는 입법상 흠결 내지 공백의 문제가 있다.

### 2.1.3.2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농어촌용수구역 설정·고시에 관한 사무도 '06년 지방이양되었고, 용수계획 수립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정기적인 조사 및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농지법에서 3,000ha 미만 농지의 시·군은 의무적 농지이용계획수립 제외되고 있는데,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조사를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의무적 이행을 위한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1.3.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정의 확대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개량(개보수, 준설), 농지확대개발 등 농지의 개발 및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및 방조제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이 전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세부기준은 없다.

하구둑구조개선, 재해대비설계기준 등 전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정책방

향과 근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농어촌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농어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의 경우,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농림부(공사)가 추진중인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의 사업개념과 유사한 국가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물관리기본법(안)에 반영되어 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에 따라 어촌·어항개발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포함될 경우 이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2.1.3.4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

현재 대구확경지정리사업만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므로 타법 준용 또는 사업추진 프로세스의 단계로 조정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2.1.3.5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등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유사 법률과 일원화가 필요하다.

#### **2.1.3.6 한계농지정비**

한계농지 정비는 주로 「농지법」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한계농지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계농지는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업적 활용 및 관광

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의 비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계농지 및 유휴지의 보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경관, 재해 예방 등 신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제정비가 수반된다.

#### **2.1.3.7 농공단지의 개발**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체계에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의 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으므로 법률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별 적정 추진체계 법제화

### 2.2.1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

#### 2.2.1.1 법체계상 문제점과 정비방향

① 농어촌정비법을 생산기반정비법과 농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문제

이에 대하여 현행 농어촌정비법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조항만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예상된다.

가. 장점

i) 농어촌지역에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관광휴양자원개발·한계농지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정 당시 법 취지이다.

ii) 법 조항이 줄어들어 이해가 쉽고 법 관리에 용이하다.

나. 단점

i) 농어촌정비 개념이 약해진다는 점

ii) 생산기반정비는 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사업추진 당위성이 점차 약해진다는 점

iii) 법 조항수가 많고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② 분리할시 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입법체계 문제

이 경우, 생산기반정비법 보다는 현행법명(농어촌정비법)을 그대로 존치하고, 생활환경정비 등 지역개발분야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될 수가 있을 것이다.

i) 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7장 보칙, 부칙은 개정

ii)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제5장 농어촌토지 등의 효율적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은 유지

iii) 제4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6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등은 삭제. 생산기반정비와 관련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법 분리시 함께 추진

③ 「방조제관리법」을 (가칭)생산기반정비법과 통합하는 방안

농어촌정비법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방조제관리법을 존치하고, 지역개발 분야를 분리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분야 보장 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다.

참고로 방조제 관리법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간척지 및 방조제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 2.2.1.2 구체적인 정비 입법사항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제개선의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용어정의 정리 문제
- ② 신규사업 등의 추가 문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수질개선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확보 문제

- i)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의 수립추진 등
- ii) 신규절차사업과 기존시설유지관리사업의 추진체계 분리
- iii) 사업시행 절차(예정지조사,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시행인가)의 단축 가능성
- iv) 시행계획 수립 후 공고를 고시로 변경



- ④ 농업기반시설 재산의 관리처분 절차 보안
- ⑤ 권한의 이양 등에 따른 절차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수립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 ⑥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절차 보안
- ⑦ 농업기반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벌칙 보안
- ⑧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의 의제 미비사항 정비
  - 산지관리법에 의한 채석허가 등
- ⑨ 환지계획에 대한 개별 통지조항 신설
- ⑩ 환지사자격 취소,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보안
- ⑪ 개간 등 농지확대의 억제 문제

### 2.2.2 농촌지역개발분야

-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농림부 이관에 따른 체제 정비
-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미비사항 보안
  - 농어촌마을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를 시장·군수, 농촌공사에서 민간 등으로 확대
    - 인허가 의제처리 확대 등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용어 정비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정비(새로운 마을건설사업과 일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내용 혼동)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의 정비
    - 시도지사 승인절차를 명확하게 설정
  -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 고시 절차 등 정비
  -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의 특례조항의 실효성 검토

-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실효성 검토
- 생활환경정비사업 수익금의 재투자에 대한 필요성 검토

### 2.2.3 소득기반분야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용어 정의 정비
- 준농어촌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지형도 고시 등 절차 보완
- 주말농원사업의 추진 절차의 필요성 검토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요율 적용 여부 검토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분야의 도농교류촉진법으로 이관 검토

### 2.2.4 기타

- 수산업생산기반정비분야 삭제('05.5.31)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

# 제3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시안

## 3.1 체계정비방향

### 3.1.1 고려사항

농어촌정비법을 정비할 경우에는 다음의 법령입안에 있어서의 원칙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기본법과의 정합성 유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약칭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도 기본법의 정책방향, 기본적 체계 등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함

- 정책의 기본방향, 기본방침
-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등
- 주요 정책 및 시책
- 부문별 분류 및 체계

○ 농어촌정비법 자체의 완결성 유지

- 「적용범위, 정의, 정책방향, 계획수립」 부문과 「각 장의 사업」부문의 체계적 일관성 유지

- 계획부문, 추진체계·조직부문, 부문별 시책 및 사업부문 등 적정한 부문별 구분에 따른 세부 입법사항의 규정 적합성 유지

○ 법령관리상 적정성 유지

- 현행 농어촌정비법을 분법하거나 다른 법령을 흡수·통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

법령의 개정관리 및 관련 예규(고시·훈령 및 지침 등)와 유권해석 등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

- 법령의 개정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바, 농림부 소관법령의 증가는 이러한 법령관리업무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적정한 법령체계와 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향후 농어촌의 환경 및 정책 발전 방향과의 정합성

- 농어촌의 변화,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이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
- FTA체결 등 국제환경의 변화
-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의 변화

### 3.1.2 정비방향

○ 기본법의 정책 및 입법사항 분류체계 반영

- 개정 기본법은 i)농업(식품산업)과 ii)농촌으로 농림부 소관업무의 기본분류체계를 삼고 있음. 즉 산업과 지역공동체(농촌지역과 농촌주민) 2개 부문으로 을 구분하고 있음.

· 식품산업은 「농업」과 「농산물 이외의 식품 생산·가공·제조 등 산업」으로 정의(기본법 제3조제8호)

· 식품산업 중 농업의 비중은 계속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음(기본법 제7조)

- 농어촌 고유사항으로 기본법 「제1장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 가운데 제45조, 제46조), 「제1장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제4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이 해당됨

· 「제1장제1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장제8절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은 각 부문 공통사항에 해당됨

※ 미비점

○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개정 기본법의 농어촌 고유사항 관련 정책방향과 시책 및 사업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위의 농어촌 고유사항 관련 기본법 내용과 농어촌정비법상의 규정 내용이 충분히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기본법 제34조(농업생산기반의정비), 제39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등의 규정 내용과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정합성 문제

○ 계획과 추진체계 및 구체적 시책·사업의 일관성·체계성 정립

- 기본법상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어촌정비법상의 각종 계획의 정합성 확보 문제

· 참고 자료에서 보듯이 농어촌정비법은 i)농어촌정비종합계획(\$4①), ii)각 사업별 계획(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 등을 두고 있으나, 기본법상의 '기본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과 사업별계획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음.

-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제28조) 및 시행계획(제32조), 환지계획(제40조 제4항)의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계획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농어촌정비사업의 4대 부문별 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 부문별 사업에 대한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문제

- 기본법상의 정책기본방향과 농어촌정비법상의 부문별 사업의 원칙(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제5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제2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은 기본방침규정이 없음) 사이의 정합성 문제

○ 분법 문제

-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2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음

i)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농업부문의 지원)

: 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임(기본법 제34조).

ii) 농촌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농촌지역공동체 및 주민의 지원) 및 공익기능 증진

: 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계승,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과 관련된 복지 혜택,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지역의 농업 이외의 산업(관광휴양단지 개발, 한계농지 등의 정비)

- 농업생산기반정비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법령을 분법할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개념 및 정책방향 자체를 수정하여야 할 것임.

: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종합적 농어촌개발법으로서의 입법목적은 수정되어야 함

\* 이 경우에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정책은 후퇴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함. 즉, 각 부문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추진될 것임.

\* 농어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무분별로 구분, 독

립하여 추진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문에 관한 입법사항의 규정은 준용규정으로 하거나 같은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게 되는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음.

○ 농림부 직제규정과 의 정합성 문제

- 농림부 직제규정 중 농촌정책국의 소관업무와 법령상의 정책·사업의 불일치 정비

· 농촌정책 관련 업무(농림부직제규정 제10조의2)는 31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과의 정합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분법 내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시 직제규정에 반영할 사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직제규정상 나타나는 계획의 종류는 모두 12종인데,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계획의 종류는 7종이며, 각 계획간의 관계도 엄밀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계획부문만을 따로 분리하여 “00계획법”으로 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범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함.

### 3.1.3 법령체계

○ 기본법 및 개별법과의 관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의 관계

i) 기본법 적합의무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시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기본법 제5조)

ii) 농어촌 관련 규정 : 기본법에는 농어촌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와 같이 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은 당연히 ‘농촌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제3장 제6절 이하에서는 농촌의 ‘공익기능, 농촌지역의 발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 실시 개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농어촌정비법은 이를 전제로 하여 개정 또는 정비할 수밖에 없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기본계획)
- 연차보고서 국회제출의무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제3장 제6절 제45조~제48조)
-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제3장제7절 제49조~제55조)
- 통일대비 농촌 정책과 국제협력(제3장제8절 제56조~제58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4장 제62조)

※ 기본법 이외의 농림부 소관 개별 법률은 기본법의 각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의 마련과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하는 체계에 있음

※ 농어촌정비법은 위의 농어촌 관련 규정을 구체적 행정으로 법제화하는 법률이며, 각 농어촌정비법상의 정책과 사업의 근거를 기본법에 두는 것이 원칙임.

- 농어촌정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i) 특별법 우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01호]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8호]



### 3.1.4 관련 법령상 계획·정책의 비교

#### o 계획 부문

농어촌과 관계되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비교하면, 우선 직제규정과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체계상으로 보면, 당연히 기본법상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농어촌정비법상의 각종 개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 내지 업무의 배분은 직제규정에서 반영되어야 정책과 집행이 일관성과 유기적 체계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에 관한 미비점이 적지 않은 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직제규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제4호)
-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호)
- 향토자원개발 등을 통한 농어촌활력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8호)
- 전원마을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제11호)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제14호)
-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계획의 수립·추진(제16호)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제17호)
-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18호)
- 농업 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23호)
- 농촌용수개발·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제24호)
- 개간·간척 등 농지개발계획의 수립·추진(제25호)
-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제26호)

#### 나.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종합계획(§4①)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6①)
-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7①) 및 시행계획(§8①)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19①)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20①)
-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27①) 및 시행계획(§31①) · 마을정비시행계획(§31②)\*
- 환지계획(§40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기본계획)(§14①)

##### ○ 정책 · 시책 부문

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업」, 「농업인」 및 「농촌」을 3대 기본요소로 하여 각각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어촌정비법은 「농업」과 「농촌」, 생산활동인 및 농어촌 정주자로서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본이념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농촌에 관하여 기본법은 「농촌의 공익기능 촉진」,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통일대비 농촌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25①)”,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77①)” 및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87①)”을 정하고 있고, 각종

계획에서 이를 반영한 체계적 정합성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각 관련 법령에서 농어촌 관련 시책 및 기본방책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가. 직제규정

-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제1호)
-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제6호)
- 농촌 경관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제12호)
- 농업용수 수질오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제27호)
- 한해(부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제28호)

나.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25①)
-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77①)
- 농공단지 개발의지원에 관한 기본방침(\$87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정책수립·시행의 기본원칙(\$6)
- 정책의 기본방향(\$7~\$13)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촉진
  -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 통상 및 국제협력

### 3.1.5 업무 근거 법령

이는 농림부 소관 법령으로서 아래와 같다.

#### 1) 농림부 소관법령 목록

-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 농림부 소관법률(농어촌 관련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20호]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01호]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8호]
  - 농지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3.2 개정시안

### 3.2.1 기본방향

#### 3.2.1.1 입법취지

농촌 공간을 종합적·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한다. 또한 법령은 운용 및 관리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한다.

#### 3.2.1.2 농어촌정비법 체계 정비 방향

농어촌정비법을 주요 입법사항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분법하면, i)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농업부문의 지원) 부문과 ii) 농촌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농촌지역공동체 및 주민의 지원) 및 공익기능 증진 부문으로 분법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고(기본법 제34조), 후자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계승,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과 관련된 복지 혜택,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지역의 농업 이외의 산업(관광휴양단지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을 입법사항으로 하는 것이다.

농업생산기반정비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법령을 분법할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개념 및 정책방향 자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종합적 농어촌개발법으로서의 입법 목적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정책은 후퇴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각 부문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추진될 것이다.

농촌 공간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크게 분류하고, 새로운 정책과 입법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한다.

건교부의 경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법적인 성격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 개발법으로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운용중인 것도 참고할 만하다.

다른 방안으로는 계획법과 실행법으로 구분하여 분법하는 방안이다. 농어촌정비법을 농촌공간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가칭)농어촌정비계획법”과 농어촌을 개발하기 위한 실행법으로 “(가칭)농어촌개발법” 또는 농어촌개발 부문별로 별도의 개발법(예; 농업생산기반정비법, 농어촌지역개발법, 농어촌산업육성법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방안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각 개별 사업에 각각 기본방침과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의 수행 요건과 절차 등을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 완결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 3.2.2 농어촌정비계획법의 입법방향

농촌토지이용 및 농촌개발사업이 국토계획체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농촌공간계획 체계를 정비한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3.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 확보

i) 농촌공간(용도지역, 지구·단지 등 지정)을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농촌공간 계획을 도시(군)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농촌토지이용과 농촌개발사업을 포괄하며, 국토계획법령상의 용도지구 외에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한다.

ii) 도시지역 수준의 상세한 용도구분이 아니라, 소규모 분산 전용되는 농촌토지 전용을 집단적으로 유도하고, 다원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용도구분에 한정한다.

iii) 개발행위 허가제 및 농지전용 허가제가 택하고 있는 필지단위의 단편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권역단위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기능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행위 허가제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농촌지역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기준 등을 도시지역과 달리 유연화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현행 농촌의 “면”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이 설정되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면 지역은 약20~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145개 면중 도시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면은 22.8%에 불과한 33개 면(시·군의 읍 소재지 지역은 전부 도시지역)이다. 현재 면 지역은 대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iv)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적인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은 농촌정비사업이 투자되는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정부가 농촌정비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지원 목적대로 토지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개념에 입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혜자들이 정부의 지원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개념에 입각하여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은 농림부주관으로 추진한다는 개념과 일치(삶의 질 법)시켜 법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추진중이지만,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v) 이러한 계획수립은 현행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면 단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3.2.3 농어촌개발법 또는 부문별 개발법

#### 3.2.3.1 입법방향 및 주요 골자

i)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법률과 농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법률 기타 부 농업관련산업개발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분법하는 것이다.

산업으로서 농업에 관한 생산기반 등의 정비에 관한 개별법률(가칭 농업생산기반정비법), 지역공동체로서 농촌의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가칭 농촌생활환경정비법), 농업과 연관되거나 농촌지역에 조성·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산업 및 산업기반의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 농촌지역개발법)로 분법하여 입법하는 것이다..

ii) 개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역·단지 등의 계획수립 및 지정과 관련된 절차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업생산기반, 농촌생활환경으로서 마을정비구역, 관련 산업 기반으로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 농공단지 등이 입법 대상으로 된다.

#### 3.2.3.2 「농업생산기반정비법(가칭)」 입법시안

i) 주요골자: 농업생산기반사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하며, 사업의 원칙, 기본계획, 기반정비 등에 관하여 규정함.

ii) 각 사업별 기본계획 및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뿐인 농어촌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 입법시안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

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溜池), 도로, 방조제, 둑(堤防)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환지(換地)"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원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현행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 제2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4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物)
3. 경제성 및 농촌경관
4.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 현행 제5조

제5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농지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0조에 따라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1.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8조 (농어촌용수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접하는 용수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



(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제21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기

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제23조 (환지계획) ①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 (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의 단순한 기재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환지 업무의 대행)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환지사의 자격) ① 제25조제2항의 환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 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제43조와 같음

제27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삭제 <2007.8.3>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삭제 <2007.8.3>
4.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28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현행 제45조와 같음

제29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제47조와 같음

제31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현행 제48조와 같음

제32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 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 현행 제49조와 같음

제33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때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 현행 제50조와 같음



제34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49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51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 현행 제52조와 같음

제36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토지 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 현행 제54조와 같음

제38조 (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제56조와 같음

제40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교환·분합의 시행)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

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 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 현행 제58조와 같음

제42조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① 제58조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③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교환·분합의 효과)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제44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한다.

제45조 (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6조 (지료 등의 감액과 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현행 제63조와 같음

제47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현행 제64조와 같음

제48조 (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해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한 것을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48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 등의 증액 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현행 제66조와 같음

#### 제4장 보칙

제50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제91조와 같음

제5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15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 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 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8.3, 2007.12.27, 2008.2.29>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

- 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 ② 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

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제53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54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현행 제95조와 같음

제55조 (토지 등의 수용) ①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인정하거나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제56조 (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① 제10조·제12조에 따라 농업

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지역,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제27조,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석(土石)·사력(沙礫: 모래와 자갈)의 채취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5.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6. 묘지·화장장·봉안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② 마을정비구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溉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 지역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현행 제98조와 같음

제58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현행 제100조와 같음

제60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허가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삭제 <2007.8.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다.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

3. 사정이 바뀌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3. 제61조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현행 제4호)

\* 삭제: 현행 3.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취소

제63조 (보고와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촌공사의 임원이나 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65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 등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 「지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소관청(所管廳)에 신청하여야 한다.

\* 현행 제106조와 같음

제66조 (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및 어장교환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및 연안해면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또는 어장교환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21>

\* 현행 제108조와 같음

\* 현행 제107조 삭제(제108조 개정 관련)

제68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 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환경 등 소관 농어촌지역 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지원한다.

\* 현행 제109조와 같음

제69조 (수리계)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②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 제111조와 같음

제71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현행 제112조와 같음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토지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2.3.3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가칭)」 입법시안

#### < 입법시안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와 정비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 제2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제24조

제4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②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집단화된 마을 조성 및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③ 정부는 제2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오지개발촉

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6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7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3.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소득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8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정비구역은 마을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고시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8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제1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3. 농어촌 마을 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 등 건축계획
4. 편익시설·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 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5. 주차장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6.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시행 절차를 따른다.

\*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12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거나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협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로 본다.

제15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촌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주체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16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두엄간(堆肥舍), 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농지로의 전환, 주위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거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換地)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보칙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2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10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8.3>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제21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제22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 ①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인정하거나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 제24조 (준용)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수용에 관하

여는 「농업기반정비법」 제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溉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 (준공검사)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현행 제100조와 같음

제28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삭제 <2007.8.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에 따른 승인

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정

3. 사정이 바뀌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

제30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현행 제103조 수정

제31조 (보고와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촌공사의 임원이나 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삭제: 현행 제106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 삭제: 현행 제107조

제33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심의)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그 밖의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현행 제108조 수정

제3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 정

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환경 등 소관 농어촌지역 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지원한다.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 록 〉

### \*\* I. 농촌정책 관련 업무(농림부직제규정 제10조의2)

#### □ 직제상 업무

1.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운영
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5.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향토자원개발 등을 통한 농어촌활력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원
9. 오지(奧地) 종합개발사업의 시행
10.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전원마을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농촌 경관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5.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추진
16.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계획의 수립·추진
17.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8.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0. 농촌관광 및 휴양사업 등에 관한 사항
21. 농업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3. 농업 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농촌용수개발·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
25. 개간·간척 등 농지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6.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7. 농업용수 수질오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28. 한해(旱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9.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1. 농촌지역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30]

□ 업무 근거 법령

1.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운영
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5.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향토자원개발 등을 통한 농어촌활력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원
9. 오지(奧地) 종합개발사업의 시행

10.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전원마을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농촌 경관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5.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추진
16.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계획의 수립·추진
17.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8.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0. 농촌관광 및 휴양사업 등에 관한 사항
21. 농업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3. 농업 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농촌용수개발·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
25. 개간·간척 등 농지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6.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7. 농업용수 수질오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28. 한해(旱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9.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1. 농촌지역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30]

## II. 농림부 소관법령 목록

-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 농림부 소관법률

- 10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7호]
- 13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06.3.24 법률 제7914호]
- 1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5호]
- 25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 29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05153호]
- 3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01호]
- 47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3호]
- 56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35호]
- 5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 6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7호]
- 6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8호]
- 6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 6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7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7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 7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20호]
- 8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85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75호]
- 9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7.8.3 법률 제8589호]
- 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50호]



9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0호]

98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1호]

100 농지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농림부 직제와 소관업무

제3조 (직무) 농림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통상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1.30]

제10조 (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농림부문 중장기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제도의 개발
5.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방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남·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맞춤형농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총괄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조정
9.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 운용 및 지원위원회 운영

10.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1.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2.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13.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14.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5. 농업인의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16.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7. 협동조합의 구조·경영개선 및 지원업무 총괄
18.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19. 농업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20. 농작물·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공제 제도의 운영
21.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2. 여성농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3. 농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재정지원 총괄
2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5. 쌀 관련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26. 쌀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
2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 및 운용
28.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등록사항 확인
29. 각종 직접지불제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0.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1.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33.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운영
34.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35.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부담경감에 관한 사항

- ④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농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재정지원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07.11.30]

제10조의2 (농촌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운영
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5.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향토자원개발 등을 통한 농어촌활력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원
9. 오지(奧地) 종합개발사업의 시행
10.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전원마을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농촌 경관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5.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추진
16.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계획의 수립·추진
17.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8.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0. 농촌관광 및 휴양사업 등에 관한 사항
21. 농업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3. 농업 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농촌용수개발·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
25. 개간·간척 등 농지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6.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7. 농업용수 수질오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28. 한해(旱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9.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1. 농촌지역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7.11.30]

제11조 (국제농업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8, 2007.11.30>

1.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협상의 추진 및 협상결과 이행에 위한 정책조정
2. 국제기구의 농업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유도
3.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4.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5. 국가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6.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

7. 국외 농업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8. 자유무역협정 농산물분야 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9.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협상결과 이행 총괄
11. 남·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전문개정 1999.5.24]

제12조 (식량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 양곡의 매입·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5. 식량생산계획의 수립·조정
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조정
8.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9. 농업분야 재해대책 업무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 수립·추진
10. 농림분야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종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13.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14. 농림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15.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업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 17.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 18. 영농자재(축산·원예용 자재를 포함한다)의 수급 및 자재산업의 육성
- 1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1.30]

제13조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개정 2007.11.30>)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1.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영
- 2.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 3. 농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지원
- 4.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 5. 농산물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 6. 농산물(전통식품 및 전통음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통정보화와 유통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7.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 8. 우수농산물관리·원산지표시·안전성조사·이력추적 및 지리적표시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 9.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의 종합·조정
- 10.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 11. 전통식품산업 및 전통외식산업의 육성
- 12. 농산물생산자와 관련 업체와의 정보교류 촉진 등 연계강화 시책 추진
- 13. 농산물 관련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 14.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 15.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16.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17. 원예·특용작물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18.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 지원
19. 농산물의 소비촉진 지원
20. 전통식품의 보급 및 전파

[전문개정 1999.5.24]

제14조 (축산정책국 <개정 2007.11.30>)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8>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 및 관리
3.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
4.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5. 초지조성·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수급 조절
6. 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산업의 육성
7.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이용에 관한 사항
8.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방역 업무의 종합 및 조정
9.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 및 위생관리의 종합 및 조정
10. 동물약품의 제조·수입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1. 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 위생관리 대책의 수립 및 추진
14.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15. 공익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익수의사의 관리

[전문개정 1999.5.24]

### 제3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18조 (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성관리·친환경농산물인증·우수농산물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2.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3. 농산물의 검사, 표준규격 및 양곡표시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5. 농업정보 및 농업통계에 관한 사항
6. 농업경영체등록 등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1.30]

제21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①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분석·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원장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 제4장 농업연수원 <신설 2004.12.31>

제24조 (직무) 농업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림부 소속공무원, 농업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12.31]

### 제5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28조 (직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8.8.1, 2000.12.30, 2007.2.8, 2007.11.30>

1.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의 검역과 검사
2. 축산물에 대한 검사 및 위생관리
3.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4.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및 수의기구의 검사
5. 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 복지향상에 관한 정책개발·시행 및 시험·연구

제6장 국립식물검역원 <개정 2007.11.30>

제33조 (직무) 국립식물검역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24, 2000.12.30, 2007.11.30>

1. 수출입식물의 검역과 검사
2. 국내식물의 검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제7장 국립종자원 <개정 2007.11.30>

제39조 (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1.30>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6.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

1963년중갱목용임목벌채에관한건 [제정 1963.4.24 각령 제1278호]

- 2 가축가금용지정의약품취급규정 [제정 1961.1.31 농림부령 제78호]
- 3 가축가금전용의약품등취급규칙 [일부개정 1962.4.25 농림부령 제94호]
- 4 가축공제규정 [일부개정 1962.8.17 농림부령 제107호]
- 5 가축보호법시행규칙 [제정 1954.5.12 농림부령 제34호]
- 6 가축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1.8.7 각령 제82호]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11 대통령령 제20544호]
- 8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정 2007.11.22 농림부령 제1573호]
- 9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제정 2003.7.11 농림부령 제1441호]
- 10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7호]
- 11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2.5 농림부령 제1584호]
- 12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31 대통령령 제20577호]
- 13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06.3.24 법률 제7914호]
- 14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6.8.29 농림부령 제1538호]
- 15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8.29 대통령령 제19665호]
- 16 국세조사령 [일부개정 1960.12.28 국무원령 제149호]
- 1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5호]
- 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6.28 농림부령 제1558호]
- 1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6.4 대통령령 제20081호]
- 20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정 1963.3.11 농림부령 제123호]
- 21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정 1963.3.6 각령 제1219호]
- 22 권농의날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71.5.14 농림부령 453호]
- 23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제29조의2에의한임차인및관리인추천규정 [제정

- 1951.9.5 농림부령 제21호]
- 24 기업예산회계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대행기관지정의건 [제정 1963.8.29 각령 제1437호]
  - 25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 26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12.31 농림부령 1302호]
  - 27 낙농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58호]
  - 28 농가대여양곡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2.26 대통령령 제4480호]
  - 29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05153호]
  - 30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28 농림부령 1246호]
  - 31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 32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30 농림부령 제1574호]
  - 33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 2000.3.6 농림부령 제1357호]
  - 34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6.12.28 농림부령 1246호]
  - 35 농림부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 1996.12.28 농림부령 1246호]
  - 3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01호]
  - 3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2004.6.5 대통령령 제18412호]
  - 38 농림축수산연구상규정 [제정 1963.11.20 농림부령 제84호]
  - 39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규칙 [전부개정 1969.6.16 농림부령 제343호]
  - 4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2.1 농림부령 1509호]
  - 41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

- 42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제정 1987.6.9 농림부령 제975호]
- 43 농산물검사소의지소및출장소사무분장규정 [제정 1949.1.26 농림부령 4호]
- 44 농산물검사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와관할구역에관한건[일부개정 1963.2.18 농림부령 제117호]
- 45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 46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4.28 농림부령 제1525호]
- 47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3호]
- 48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6.29 농림부령 제1561호]
- 4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6 대통령령 제20431호]
- 50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전문개정 1970.7.9 대통령령 5178호]
- 51 농산종묘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1.7.7 농림부령 제456호]
- 52 농산종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53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3.22 대통령령 제8037호]
- 54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규칙 [제정 1973.9.18 농수산부령 제544호]
- 55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일부개정 1974.11.8 대통령령 제7392호]
- 56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35호]
- 57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6.19 대통령령 18432호]
- 5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 5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6 농림부령 제1564호]
- 6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7.2 대통령령 제20148호]
- 61 농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1974.7.29 농수산부령 574호]
- 6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7호]
- 63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8.30 농림부령 제1445호]
- 64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
- 6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8호]
- 6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 6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68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5 농림부령 제352호]
- 69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30호]
- 70 농어촌고리채정리법시행령 [전부개정 1970.7.21 대통령령 제5218호]
- 7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2조의2시행에관한규정 [전부개정 1970.7.21 대통령령 제5219호]
- 72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정 1969.12.29 농림부령 제415호]
- 73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19 대통령령 제5487호]
- 7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7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 7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4.28 농림부령 제1525호]
- 7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 7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20호]
- 7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2.4 농림부령 제1583호]
- 8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1.31 대통령령 제20579호]
- 81 농어촌지방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 82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4.28 농림부령 1470호]
- 83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4.24 대통령령 제18377호]
- 8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85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 86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1.18 농림부령 제1482호]
- 87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1.18 대통령령 제18591호]
- 88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2007.6.11 대통령령 제20085호]
- 89 농업연구교도공무원자격검정시험규정 [제정 1957.8.10 농림부령 제57호]
- 90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제정 2003.9.3 농림부령 1446호]
- 9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7.8.3 법률 제8589호]
- 92 농업통계조사규칙 [제정 2001.3.30 농림부령 1384호]
- 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50호]
- 9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9 농림부령 제1497호]
- 9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
- 9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0호]
- 9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31 대통령령 제20574호]
- 98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1호]
- 99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7.27 대통령령 제20198호]
- 100 농지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분야별 연구 참여내역

연구항목	한국농촌공사		용역기관	
	부서명	성명	기관명	성명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 검토	농어촌연구원	임창영 김현수 김광용		
농촌지역개발 분야 검토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친환경 및 농촌생활환경 분야 검토	농어촌연구원	이승헌		
농어촌정비법 현행 체계와 문제점			한국법제 연구원 이진우법률 사무소	이준우  이진우
농어촌정비법 개정시안			한국법제 연구원 이진우법률 사무소	이준우  이진우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발 행 처

농촌정책변화에 따른 농촌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발 행	2008. 2
발행인	임 종 완
발행처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